



제417회국회(임시회)
제2차 국방위원회
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국군의무사관학교 졸업생의 복무와 의무복무기간〉

■ 성일중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00632호)

2024. 8.

국 방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오 명 호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참고사항	1
IV . 검토의견	2

I. 제안경위

1. 발 의 자 : 성일종의원 등 10인
2. 발의연월일 : 2024. 6. 19.
3. 회부연월일 : 2024. 6. 27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장기복무 의무장교를 지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유사시 중증 외상 환자 등을 치료할 수 있는 숙련된 의료인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군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며, 이와 같은 군 의료체계의 붕괴는 군 전력을 약화시키고 국가안보마저 위태롭게 만들 우려가 있음.

이에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립하여 유능한 군 의무장교를 양성할 수 있도록 「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」을 제정함에 따라 국군의무사관학교의 졸업생을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하여 15년간 의무복무하게 하고, 그 밖에 현행법상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(안 제6조제2항 제1호의2 및 제7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등).

III.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성일종의원 대표발의한 「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」(의안번호 제630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IV. 검토의견

개정안은 「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」에 따른 국군의무사관학교 졸업생의 복무와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.

[신·구조문대비표]

현행	개정안
제6조(복무의 구분) ① (생략)	제6조(복무의 구분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장기복무 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<신설>	<u>1의2.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</u>
2. ~ 4. (생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
③ ~ ⑥ (생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
⑦ 단기복무 부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	⑦ ----- ----- -----.
1. ~ 4.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사관학교, 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중퇴한 사람 또는 사관후보생과정을 중퇴한 사람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전형을 거쳐 부사관으로 임용된 사	5. ----- <u>육군3사관학교, 국군간호사관학교 또는 국군의무사관학교</u> ----- ----- ----- -----

현행	개정안
람 6. (생략) ⑧ (생략) 제7조(의무복무기간) ① 장교, 준사관 및 부사관(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는 제외한다)의 의무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전시·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. 1. 2. (생략) <u><신설></u> 3. ~ 7. (생략) ② ~ ⑥ (생략) 제11조(장교의 임용) ① 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. 1. 2. (생략) <u><신설></u> 3. ~ 8. (생략) ② 전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장교로 임용할 수 있다.	- 6. (현행과 같음) ⑧ (현행과 같음) 제7조(의무복무기간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 <u>2의2.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군의 무사관학교를 졸업하여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15년으로 한다.</u> 3. ~ 7. (현행과 같음) ② ~ ⑥ (현행과 같음) 제11조(장교의 임용) ① ----- ----- 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 <u>2의2.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</u> 3. ~ 8.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.

현행	개정안
1. ~ 3. (생략) <u><신설></u> 4. (생략) 법률 제20018호 군인사법 일부개정 법률 제11조(장교의 임용) ① (생략) ② 전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장교로 임용할 수 있다. 1. ~ 3. (생략) <u><신설></u> <u>3의2.</u> (생략) 4. (생략) 제12조(장교의 초임계급 등) ① 장 교의 초임계급은 소위로 한다. 다 만, <u>제11조제1항제7호의2</u>에 따라 임용될 사람의 계급은 전역 당시 의 계급으로 한다. ② 제11조제1항제1호·제2호·제 5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용될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항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임계 급은 중위 이상으로 할 수 있다.	1. ~ 3. (현행과 같음) <u>3의2. 국군의무사관학교의 제4학 년생</u> 4. (현행과 같음) 법률 제20018호 군인사법 일부개정 법률 제11조(장교의 임용) ① (현행과 같 음) ②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<u>3의2. 국군의무사관학교의 제4학 년생</u> <u>3의3. (현행 제3호의2와 같음)</u> 4. (현행과 같음) 제12조(장교의 초임계급 등) ① --- -----, --- ---<u>제11조제1항제2호의2에 따라</u> <u>임용될 사람의 계급은 중위로 하</u> <u>고, 같은 항 제7호의2</u>-----.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현행	개정안
1. ~ 3. (생략) 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총 교육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가. 사관학교, <u>육군3사관학교</u> 또는 <u>국군간호사관학교</u>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그 재학기간 중에 외국 장교양성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나. 외국 장교양성학교의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으로서 그 재학기간 중에 사관학교, <u>육군3사관학교</u> 또는 <u>국군간호사관학교</u>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4의2. ~ 5. (생략) ③ ~ ⑤ (생략) 법률 제20018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(장교의 초임계급 등) ① (생략) ② 제11조제1항제1호·제2호·제5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용될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임계	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----- ----- 가. -----<u>육군3사관학교</u>, <u>국군간호사관학교</u> 또는 <u>국군의무사관학교</u>----- ----- ----- ----- 나. ----- ----- ----- <u>육군3사관학교</u>, <u>국군간호사관학교</u> 또는 <u>국군의무사관학교</u>----- 4의2. ~ 5. (현행과 같음) ③ ~ ⑤ (현행과 같음) 법률 제20018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(장교의 초임계급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현행	개정안
급은 중위 이상으로 할 수 있다. 1. ~ 3. (생략) 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총 교육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가. <u>사관학교, 육군3사관학교, 국군간호사관학교 또는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그 재학기간 중에 외국 장교양성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</u> 나. <u>외국 장교양성학교의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으로서 그 재학기간 중에 사관학교, 육군3사관학교, 국군간호사관학교 또는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</u> 4의2. ~ 5. (생략) ③ ~ ⑤ (생략)	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----- ----- 가. <u>사관학교, 육군3사관학교, 국군간호사관학교, 국군의무사관학교 또는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그 재학기간 중에 외국 장교양성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</u> 나. <u>외국 장교양성학교의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으로서 그 재학기간 중에 사관학교, 육군3사관학교, 국군간호사관학교, 국군의무사관학교 또는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</u> 4의2. ~ 5. (현행과 같음) 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□ 동 개정안은 「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」(의안번호: 2200630호, 성일중의원 대표발의)의 의결을 전제로, 해당 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국군의무사관학교의 졸업생이 장교로 임용되며, 15년간 의무복무를

하도록 하고 있는바¹⁾,

이러한 제정안의 취지에 맞추어 「군인사법」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법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.

다만, 「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」의 논의 상황에 따라 의무복무기간 등 일부 조항을 연계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음.

한편, 동 개정안은 현행 법률과 시행예정법률(법률 제20018호)을 동시에 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, 이것은 공포 후 시행 전 법률의 시행일(2026년 1월 17일)보다 동 개정안을 먼저 시행(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)하고자 하는 취지에 따른 것으로,

만약 「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」의 시행일을 2026년 1월 17일 이후로 변경할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할 것임.

문 의 처

02)6788-5304

1) 다만, 현행 「군인사법」에 따르면 의무장교가 수습기간(인턴, 레지던트)을 거칠 경우 그 기간만큼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하도록 하고 있는바, 의무사관학교 졸업자도 당연히 의무장교로 임용될 것으로 해석되므로 통상적인 수습기간(5년)을 감안하면 의무복무기간은 20년까지 연장됨

「군인사법」 제7조(의무복무기간) ③ 의무장교로서 기초의학과정이나 전문의학과정을 수습(修習)한 사람은 그 수습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한다.